

제423회 국회
(임시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
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13일(목)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8)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2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2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8)	2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여객기참사 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의 의견입니다.

특위 차원에서 지난 1월 18일 합동 추모식과 2월 15일 사십구재에 참석하여 유가족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6일에도 참사 현장과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유가족분들의 의견과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내용들을 참고하여 법안 심사에 적극 반영해서 신속하고 충실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찰청장직무대행이 2025년 신임 경찰관 임용식 참석 관계로, 보건복지부제1차관이 민생경제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국토부장관과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관계로 오전 10시 50분부터 이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권영진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5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8)

(10시04분)

○**위원장 권영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김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의원**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슬픔과 아픔에 젖어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상처를 위로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와 우리 국민의힘 모든 국회의원은 유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이지만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현행법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특별법안에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유가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가족분들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치유휴직 적용, 유가족분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잃어버린 가족과 함께 희망도 스러질 수 있었던 유가족 및 부상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루만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진** 김은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의원**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다시 한번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12.29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께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참사의 원인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족 등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고통,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그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제도는 12.29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피해구제와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심리치료지원·생활지원·의료지원·돌봄지원·법률지원 및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상법상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제한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로 하여금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직장인인 경우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치유휴직을 보장하도록 하며, 유가족의 지속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자조활동 등을 위한 유가족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유가족의 권리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와 사고조사단에 이번 참사의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국회가 각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위촉·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내용에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여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 모두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지원, 철저한 진상조사로 투명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는 취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가족 등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진** 이수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

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12·29여객기참사의 피해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심리상담·의료적 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복합시설의 설치 및 추모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사례 깊고 충분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에 함께하며 회복의 길을 같이 걷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혜와 관심으로 진정한 피해자 중심의 특별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진 전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및 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특별법안 5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 참사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어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제정안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번 참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 등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와의 중복,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 가능성,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조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각 제정안은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 지원·추모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한 지원, 생계·의료 등에 대한 지원 및 치유휴직, 공동체 회복 지원 및 추모사업과 국회 추천 사고조사위원 및 사고조사관 추가 임명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들 사이에 지원 대상이 되는 희생자·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범위, 특별법에 따른 사단·재단에 대한 세법상 공익법인 간주 여부,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하여 형별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등 지원되는 사항과 그 수준 또는 수단 등에 일부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이번 참사의 특성, 구체적인 피해 상황 및 피해자의 의견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영진 임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고기동 행안부장관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이수진 위원 우리 특위가 무안공항, 광주에 마련된 유가족 사무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유가족분들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유가족들께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로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챙겨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힘으로 버티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 모두 감명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해서 송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조적인 활동들은 매우 효과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 영역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조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이 자조활동을 위한 유가족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 법안에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선례가 없다 그리고 다른 참사 유가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세월호하고 이태원 참사하고 좀 고려를 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치유와 회복에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다른 사례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오히려 확대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행안부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유족의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너무나 소극적인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돼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유가족협의회가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하는 사단법인일 경우다 이렇게 한정을

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특정을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지원해야 되는 국가의 책무에 기초를 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저희 소위 심사 전에 우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의원님 발의 내용 중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수진 위원**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사조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조위를 국토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상당수 발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번 참사 발생에는 엔진 등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관리책임 등 다양한 문제가 조사 대상이 되고 실제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셀프조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인 사조위원장이 사임을 하셨고 국토부 직제 규정에 따라서 사조위 상임위원을 당연직으로 겸직하고 있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사조위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이번 참사는 다른 사고랑 달리 향후 보잉 사프란 등 외국 기업과 책임 소재와 책임 비율에 대한 분쟁도 있을 수 있어서 사조위 구조가 국제기준에 맞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보시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사조위와 사고조사단 구성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각 2인 이내에서 위촉·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에서 사고조사 당국이 조사의 수행이나 객관성에 간섭할 수 있는 기관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장관께서 국회에서 사조위원회를 추천하는 것이 사조위 객관성과 독립성을 해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잘하자고 한 것이 기준에 충돌되는 것으로 이해가 돼 가지고 오히려 사고조사를 더 자연시킨다든지 또 보상 문제를 복잡하게……

○**이수진 위원** 한번 따져 보세요. ICAO랑 그다음에…… 사고조사기구가 정치적 그리고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세부 내용에 오히려 사고조사 당국이 항공 당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로 치면 사조위가 국토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해외 사례들을 좀 들여다보면.

1분만.....

○위원장 권영진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ICAO가 말한 독립적 구조는 원칙적으로는 같은 장관 밑에 사고조사 당국과 항공 당국이 함께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몇 개 내용들을 다 뒤져 보니까.

만약 두 조직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도 그 다섯 가지 기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수진 위원 기능적 독립, 주체적 조사, 보고서 발표 권한, 중요 요소 법률화 그리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성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우리나라 사조위의 독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입법조사처나 국책연구원 자료를 들여다보니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모든 국가가 조사기구의 예산과 인력이 항공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조위가 예산·인사에 대해 국토부장관에 종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사조위 조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진 이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박상우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2.29 여객기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대참사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미애 위원 무안공항 등 전국 14개 민간공항을 운영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띤 한국 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지요? 한 8개월 정도 공석이었습니다.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황이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공항 안전을 위한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이었던 22년 2월 25일 3년 임기의 공항공사 사장으로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국정원 출신 인사를 앉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대선 불과 2주 앞둔 시점이지요. 그런데 이 알박기 인사가 공항이나 항공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였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공항공사 사장은 계속 근무하다가 지난해 4월에야 퇴임했습니다. 전 정부 인사로 이루어진 공항공사 수장이 전문성도 취약한 상태로 현 정부와 제대로 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졌던 것이지요.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인사를 지난 6월 사실상 사장후보로 내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책임

있는 낙하산 인사라며 문제 삼았고……

○전진숙 위원 특위하고 관련된 이야기만 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관련되는 겁니다. 들어 보세요.

○위성곤 위원 아니, 항공참사특위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항공사 사장 임명 얘기 를 해요, 도대체.

○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잠깐 듣고 나중에……

○김미애 위원 관련되는 겁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와 관련 있는 걸 하잖아요.

○전진숙 위원 국토위 질문에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김미애 위원 전문성 없는 인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데 왜 제 질의를 방해를 하세요. 좀 들어 보세요.

○위성곤 위원 질의 방해가 아니라 항공참사특위 관련해서 법안 상정, 대체토론하고 있는데……

○위원장 권영진 위원님들, 잠깐만. 위원님들……

○김은혜 위원 질의권을 허락받으시고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은혜 위원 허락받으십시오, 위성곤 위원님.

○위원장 권영진 위성곤 위원님, 김은혜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유족들이 와 계시잖아요.

○김미애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김은혜 위원 동료 위원의 발언 중에는 끼어들지 마세요.

○김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위원장 권영진 김미애 위원님도 잠깐 중단하세요. 중단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들어 보고 하시지요.

○위성곤 위원 들어 보고가 아니고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위원장 권영진 위성곤 위원님!

○김미애 위원 제가 무슨 질의 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권영진 위성곤 위원님, 잠깐만요.

○김미애 위원 제 결론 안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함부로 말씀하세요?

○위성곤 위원 결론 안 봐도 지금 그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수진 위원 문 정부 알박기 인사가 뭐예요, 문 정부 알박기 인사가.

○김미애 위원 사실이니까 그 질의를 하는 거지요. 좀 들어 보세요.

○전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항공 참사하고.

○김은혜 위원 아니, 위원님들, 지금 동료 위원의 질의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금 대체토론하는 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김미애 위원 제 질의가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김은혜 위원 끝까지 들어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왜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진 위원님들……

○**위성곤 위원** 도대체……

○**위원장 권영진** 아니 위성곤 위원님, 중간에 위원장으로부터 이렇게 지명을 받지 않고 얘기를 해 버리면 회의 진행이 안 되니까, 아마 말씀을 하시다 보면 서로 좀 귀에 듣기 부담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음 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 할 수는 있으니까 상대방 위원들이 얘기할 때 중간에 이렇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이런 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미애 위원이나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우리 특위는 여객기 참사의 피해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있는 특위입니다. 그 취지에 조금 부합하게 적절하게 여러분들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제 이번부터는 절대 끼어들지는 마십시오.

김미애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취지도 향후에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나 그전 역대 정부에게 공항공사는 전문성과 능력이 필요한 공기업이 아닌 마치 정권의 전리품처럼 다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사장 리스트를 보면 지난 80년 공사 설립 이래 총 13명의 이사장·사장 중 항공 분야 경력자, 그것도 추리고 추려도 4명뿐입니다. 나머지는 공항공사 업무와 거리가 먼 국정원, 경찰, 군인, 관료 출신 등이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과거 나름 각자의 분야에서 경력과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객기 참사에서 보듯이 항공기 사고, 공항에서의 사고는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로 이어지고 국민 전체가 아픔에 빠져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항공사 사장과 임원은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영진** 잠깐 중단하세요.

김미애 위원님, 좋은 질의신데 지금 시간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취지에 좀 충실하게 이제 좀 마무리하시고……

○**김미애 위원** 저는 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여깁니다.

○**위원장 권영진** 그리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 등은 반드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공항공사 낙하산 방지법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법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감사직을 제외한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최소한 어느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공항공사 임원, 사장

자리만이라도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최근에 직전 공항공사 사장께서는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기도 하셨지요. 저는 그런 게 왜 생기는지, 앞으로는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국민들께서도 이 사고를 바라볼 때 공항공사 수장이 공석인 상태 또 이전에, 그 이전에 공항공사는 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 만약에 전문성과 책임이 있는 분이 그 사장과 임원직에 있었다면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거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로컬라이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문성이 있었으면 사전에 발견해서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일단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 법률이고요. 양 공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공공기관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유독 모든 공공기관장의 임명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부디 이 두 개 공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차원의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 공사만을 특별하게 다를 이유가 있는지 혹은 또 그런 자격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는 제출하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권영진** 다음 대체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실 거를 김미애 위원님께도 중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우리 대체토론에 충실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 상정 이후에 제출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법안과 직접적 관련이 아닌 것이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진** 그래요?

○**백선희 위원** 항공 참사 사고 진상규명과 관련된 것인데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진** 그러면 위원님들, 대체토론은 끝났는데 대체토론 이외의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여야 한 분씩만 더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듣고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또 무한정할 수는 없고.

양해해 주시면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우리 특위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먼저 박상우 국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제가 무안공항에 여러 차례 가면서 유가족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안타깝고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둔덕 충돌 직전의 4분 7초가량의 블랙박스가 남아 있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행자료기록과 조종실음성기록이 왜 남아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장관님, 일부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 두 기록이 사라질, 모두 사라질 확률이 700만 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어느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그렇게……

○**백선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유례없는 일이 왜 하필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항공기 운항기술에 관한 법령에는 항공기의 동력장치 손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FDR이라는 비행자료기록과 CVR이라는 조종실음성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국내외 모든 여객기에는 비행자료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동력장치가 장착되어 있고요.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 감항증명을 최초로 발급받은 항공기에는 조종실음성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전원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종실음성기록 유지를 위한 대체전원장치부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전원장치는 항공기의 전원이 손실되더라도 약 10분 동안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여객기에는 2009년 9월 제작되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종실음성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이라고요.

제가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은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요 올해 2월 초 기준으로 국적사 410대, 414대 중 대체전원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146대에 달합니다. 전체의 35.3%가 되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장착하지 않은 비율이 48.5%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장관님, 그러면 저는 이것이 지금부터라도 전부 장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마 오늘 국토위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방침은 앞으로 신규로 도입되는 여객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

로 장착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운항 중인 비행기는 대부분 임차로 쓰고 있는 것이라서 그거를 또 장착하게 하면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거를 또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아예 없던 장치를 새로 달게 되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항공기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핵심 기록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국제사회와 논의를 하게 되면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형기당, 사실 한 대당 5~1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장착 기간을 충분히 주고 또 곧 반납할 그런 항공기가 있다라고 하면 예외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저는 FDR, 비행자료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기에는 엔진이 손상되어 항공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보조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보조동력장치, APU라고 하는 것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동하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4분여간의 고도, 속도, 엔진 상태 등과 관련된 비행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종완 항공정책실장님 나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 자리해주시고요.

실장님, 설령 조류 충돌로 인해서 좌우 날개에 붙어 있는 두 개 엔진이 동시에 꺼졌다 고 하더라도 비행기의 꼬리 부분에 위치한 APU는 살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수동 조작으로 알고 있는데 결 시간이 부족해서 못 켜 것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위원님, 사고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조위가 시행하고 있는 사고 원인,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FDR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행 시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전력과 공압을 공급하는 작은 제트엔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행자료기록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종과 착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만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대체전원장치, 보조동력 장치가 모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진 백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달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저희들도 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특위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달희 위원 지난 질의에서 유가족 교육비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달희 위원 특별법안 5개가 제출됐는데 그중의 4개 안에 유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각 안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경우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무상교육이므로 결국 남는 건 대학 등록금 지원에 관한 것이 남습니다. 유가족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지원에 대해 3개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원 방법이 제시돼 있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세월호피해지원법 등 유사 입법례와 현재 정부 시책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학 등록금 지원 대상자, 기간 등 최대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현재 유사 사례에서는 1년이 최대인 것으로, 두 학기요.

○이달희 위원 예, 두 학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두 학기가 최대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데 지난 현안보고 때, 제가 유가족 대학 등록금 질의했을 때 그때 나왔던 장례위원장했던 이혁 위원장께서 유가족 자녀들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비 전액을 면제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한 거는 지금 대학생들 두 학기 또 휴학하게 되면 26년, 28년까지 두 학기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갔을 때 부모들이 안 계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대학교 등록금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면질의에서 국토부 답변서를 보니까 ‘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해서 교육부와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고요. 또 교육부 의견은 ‘타 재난장학금 등과 형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됨’ ‘추후 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등록금 지원 등을 통해 학업 지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장관님,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형평성 고려해야 되겠지만 희생자의 직계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첫 질

의에서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 위원님께서 행안부차관님께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같은 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부로서는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고요. 재정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다른 유사 사례의 선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국토부로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런 유사 사례가 있더라도 좀 더 전향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아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서, 응당 법안소위 심사가 열릴 거고요. 지금 또 저희가 유가족 대표들하고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개별적인 미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국토부로서는 유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최대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정부가 그렇다면,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달희 위원 저희들이 기금이나 이런 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이 기금으로 꾸준하게, 지금 초중고등학교 직계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파악이 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진 이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저는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건의라면 건의인데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이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문금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카페, 편의점, 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긴 하지만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를 했다고 그리고, 또 참사 이후에 공항이 폐쇄되면서 현재 공항에는 일부 훈련용 경비행기 조종사 그리고 무안공항 일부 직원들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공항 내부의 음식점 카페도 거의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곳이 있고, 또 무안공항 인근에 있는 상가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직원들의 생계도 좀 챙겨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항공기 취급 업체, 예를 들면 항공기 급유업, 항공기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이런 항공기 취급 업체도 무안공항이 폐쇄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 피해 현황도 조사를 하시고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게 부산지방항공청장이 현장에 달려왔어요. 그때 상당히 오랜 시간, 3~4시간 이후에 도착한 걸로 아는데 저는 당시에 알았습니다만 왜 부산지방항공청장이 호남 지역까지 관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차제에 좀 검토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명칭이야 뭘로 하든, 전남지방항공청이 됐든 호남지방항공청이 됐든 이런 기구도 신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부산지방항공청이 아무래도 호남 지역 까지 관광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마침 또 행안부도 계시고 그러니까, 건의 말씀을 드리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피해보상의 범위에 직접 인명 손실을 받으신 희생자들의 유가족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에 입점해 있거나 인근 지역에서 영업상 피해를 보신 분들도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노력이 실제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지방항공청 문제는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 국토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저희야 사실은 지방청 조직이 많이 있으면 국토부로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조직을 엄격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만 지금 있고요.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다 보니까 별도로 취급을 해서 세 군데 지방항공청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항공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좀 더 현장 밀착적인 지원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접한 곳에 적절한 기관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진** 문금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간단히.

○**위원장 권영진** 자료요? 아까 자료 여쭙고 시간을 드렸는데.

짧게 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최근 언론에 27년 차 베테랑 소방공무원이 수습 이후 사고 초기 3일의 기억이 사라지는 단기기억상실을 겪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고기동 행안부장관직무대행께 제가 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행안부의 자료를 받았는데 현장에 투입된 누적 공무원이 2만 8058명이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심리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그것이 또 제대로 받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자가검진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투입 인원 전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힌 기관의 지역 공무원 중 일부는 초기 스크리닝 상담도 받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심리 지원이 일관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주위 동료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다녔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해서 몹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심리회복 지원체계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총괄하고 행안부와 복지부가 분담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통해서 매뉴얼을 통일하고 수시로 자가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매뉴얼과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제대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얼마인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진** 행안부장관권한대행님,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김미애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대체토론과 또 추가적인 현안토론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수진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잠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잘 원만하게 협조해 주셨습니다.

또 장관님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권영진 권향엽 김대식 김미애 김은혜 문금주 백선희 손명수 위성곤 이달희
이성권 이수진 전진숙 정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 서기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제2차관 백원국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단장 박정수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안전정책국장 김주이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중규

경찰청

기획조정관 도준수

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보고사항】

○의안 회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2. 28.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2. 2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이상 2건 3월 5일 회부됨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5. 3. 5.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2025. 3. 5.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이상 2건 3월 7일 회부됨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2025. 3. 7.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8)

3월 10일 회부됨